

‘제35회 인쇄문화의 날’ 계기 2023년도 인쇄문화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제35회 인쇄문화의 날’을 기념하여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훈격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후 확정 예정
 - ※ 2022년 포상 규모(훈장 1매, 대통령표창 1매, 국무총리표창 1매, 장관표창 20매)

2. 추천대상자(선발 기준)

- 가. 인쇄 관련 원자재 및 인쇄기기 국산화에 기여한 자
- 나. 인쇄공정 개선, 기술혁신 등 인쇄기술 향상에 기여한 자
- 다. 인쇄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 라.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등 인쇄문화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마.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기업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한 자
- 바. 인쇄환경 개선 및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신청 자격

- 가. 인쇄분야 경영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나. 훈장은 15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23. 6월말 기준)

4. 포상 제외대상

- 가. 재포상 금지 (*기준일: 포상추천일(6월))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정 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5.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추천자: 인쇄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추천자는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
- 외국인 추천은 유관단체(기관) 추천에 한함
 - *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추천
-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추천 가능

○ 접수기간: 2023.5.8.(월)~5.30.(화), 23일간

○ 제출서류: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공적요약서 포함), 정부포상 동의서 1부, 공적 증빙자료 1부

○ 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로 동시 제출

○ 서식배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인쇄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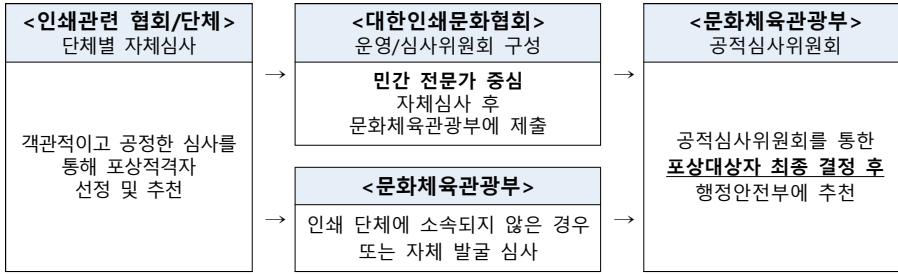
○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이메일: seulkeej@korea.kr)

- **(사)대한인쇄문화협회**: (우 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5길 12(이메일: printculture@hanmail.net)

※ 인쇄관련 단체: 대한인쇄문화협회 등(단체 추천 시 인원 수 제한 없음)

6. 후보자 추천 절차



7. 수상자 발표: 2023년 9월 중 개별통지

8. 시상일(예정): 2023년 9월 14일(목)

9. 기 타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7) 및 대한인쇄문화협회(☎02-335-5881)로 문의하시기 바람